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17204 |
|------------|-------|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의자 : 백재현 · 안호영 · 고용진
정세균 · 황주홍 · 원유철
추미애 · 한정애 · 최인호
박범계 의원(10인)

제안이유

천연가스는 운반이나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하여 냉각하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기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Cold Energy)가 발생함.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액화탄산가스 ·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의 제조나 냉동창고 · 냉열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냉열에너지를 대부분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바다에 버렸고, 이는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이렇게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냉열에너지 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천연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를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4호의5 신설).

나.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제7항 및 제11항 신설).

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안 제8조의4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시설“로 한다.

4의5.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화시키는 과정(이하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전부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을 말한다.

제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부터 제9항”을 “제8항부터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제7항부터 제10항”을 “제8항부터 제12항”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⑦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제7항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액화천연가스에서 기화된 천연가스를 이용·공급하는데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유치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

을 것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사업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
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
가 소비하려는 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
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
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 후단 중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를 각각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
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각각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로 한다.

제50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영위한 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의2호 중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제3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조 후단”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제7호의2 중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
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
는 사업을 말한다.

4. (생 략)

4의2. ~ 4의4 (생 략)

<신 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
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
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
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액화천연
가스냉열이용사업자

-----.

4. (현행과 같음)

4의2.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
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의
냉열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하
여 기화시키는 과정(이하 "냉
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냉열이용과정
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전
부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말한다.

5.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
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시

시설을 말한다.

6. · 10. (생 략)

제3조(사업의 허가)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⑧ (생 략)

⑨ (생 략)

<신 설>

설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시설-----.

6.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
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제7항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냉열이용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1. 액화천연가스에서 기화된 천
연가스를 이용·공급하는데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
치·유치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
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
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지수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 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 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

(3) 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 |
|--|--|
| <p>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 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 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 가스제조사업자, <u>합성천연가스</u> 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 수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생 략)</p> <p>제41조(보고 등) ① (생 략)</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일반도시가스사업자</u>, <u>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u>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7(금지행위) ① -----</p> <p>-----</p> <p>-----</p> <p>-----</p> <p>-----</p> <p>-----</p> <p><u>합성천연가스</u> 제조사업자, <u>액화천연가스냉열</u> 이용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 수입자-----</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나프타</u> 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u>액화천연가스냉열</u> 이용사업자-----.</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 | |
|---|--|
| 제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 부터 <u>제5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4조(수수료 등) ① ----- --- <u>제5항까지 및 제7항</u> ----- ----- ----- ----- ----- -----.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 한 적용배제) ① (생 략) |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 음) |
| (2)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 스제조사업자</u> 에 대하여는 제40 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 액화천연가스냉 열이용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 스제조사업자</u> -----. |
| 제48조(벌칙) ① (생 략) | 제4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 중 <u>가스충전시설, 나프타 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설</u> <u>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설을</u>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 오가스제조사설, 액화천연가스 냉열이용시설 또는 합성천연가 스제조사설</u> ----- ----- ----- -----. |
| (3) ~ (13) (생 략) | (3) ~ (13) (현행과 같음) |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 제50조(벌칙) ----- ----- |

| | |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u> 또는 <u>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u> 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u> , <u>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u> 또는 <u>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u>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4조(과태료) ① ----- ----- ----- -----. |
| 1. ~ 7. (생 략) 7의2.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u>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 ----- <u>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u> 또는 <u>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u> |
| 8. ~ 17. (생 략) ② ~ ⑦ (생 략) | 8. ~ 1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